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헬기의 도입에 따른 중앙119구조본부 운용인력 30명(소방위 2, 소방장 2, 소방교 4, 소방사 4, 전문경력관 가군 8, 전문경력관 나군 10)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인력 1명을 소방위에서 소방교로 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 보건안전 연구분야 업무상 공백방지를 위하여 전문경력관 1명을 연구관으로 직종을 조정하기로 하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긴급현안의 발생 등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 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조정하며,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수구조훈련과를 특수대응훈련과, 특수장비항공팀을 특수장비항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119구조상황실장을 소방령, 특수장비항공과장을 소방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준감”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정”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과·특수구조훈련과·특수장비항공팀”을 “기획협력과·특수대응훈련과·특수장비항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9구조상황실장·기획협력과장 및 특수구조훈련과장은 소방정으로, 특수장비항공팀장”을 “기획협력과장·특수대응훈련과장 및 특수장비항공과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제17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구조훈련과장”을 “특수대응훈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장비항공팀장”을 “특수장비항공과장”으로 한다.

10.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예방점검 지원

11.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

12.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 지원 및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시행

13. 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 관리

14.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

15.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 운영 및 특수사고 ·

특수재난의 대응 ·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5 중 총계 “440”을 “47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3”을 “395”로 하며, 소방위 “63”을 “64”로 하고, 소방장 “76”을 “78”로 하며, 소방교 “91”을 “96”으로 하고, 소방사 “81”을 “85”로 하며, 일반직 계 “57”을 “75”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18”을 “24”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9”를 “11”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12”를 “18”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6”을 “10”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4급 이하 “22”를 “2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및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의3]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

(제10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 계	440
소방공무원 계	383
소방감	1
소방정	7
소방령	24
소방경	40
소방위	62
소방장	76
소방교	92
소방사	81
일반직 계	57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 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전문경력관 가군(정보분석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18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9
전문경력관 나군(정보분석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12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6
전문경력관 나군(119구조견담당)	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 정법무담당관·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 획재정담당관은 <u>소방준감</u> 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보건안전 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서 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으로 보한다.	제2조(기획조정관) ① ----- ----- ----- ----- <u>소방준감 또는</u> <u>소방정</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화재대응조사과· 구조과 및 119구급과를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u>소방준감</u> 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u>소방정</u> 으로 보한다.	제3조(119대응국) ① ----- ----- ----- ----- ----- <u>소방준감 또는</u> <u>소방정</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 19구조본부에 <u>기획협력과·특 수구조훈련과·특수장비항공팀</u>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두고, 중 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 ----- <u>기획협력과·특수</u> <u>대응훈련과·특수장비항공과</u> - ----- -----

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② 119구조상황실장·기획협력과장 및 특수구조훈련과장은 소방정으로, 특수장비항공팀장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1. ~ 10. (생략)

11.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예방점검 지원

12.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 구조대책 수립

13.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 지원 및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시행

14. · 15. (생략)

16. 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 관리

17.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

18. (생략)

19. 그 밖의 특수사고·특수재난의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

② 기획협력과장·특수대응훈련과장 및 특수장비항공과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 -

-----.

③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4. · 1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8.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생 략) ⑤ <u>특수구조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9. (생 략) 10. <u>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 운영</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⑥ <u>특수장비항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17. (생 략) ⑦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특수대응훈련과장-----</u> -----. 1. ~ 9. (현행과 같음) 10. <u>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예방점검 지원</u> 11. <u>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 구조대책 수립</u> 12. <u>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 지원 및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시행</u> 13. <u>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 관리</u> 14. <u>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u> 15. <u>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 운영 및 특수사고·특수재난의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u> ⑥ <u>특수장비항공과장-----</u> -----. 1. ~ 17.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40	470	+30
소방공무원 계	383	395	+12
소방위	63	64	+1
소방장	76	78	+2
소방교	91	96	+5
소방사	81	85	+4
일반직 계	57	75	+18
전문경력관 가군 (항공조종담당)	18	24	+6
전문경력관 가군 (항공정비담당)	9	11	+2

전문경력관 나군 (항공조종담당)	<u>12</u>	<u>18</u>	+6
전문경력관 나군 (항공정비담당)	<u>6</u>	<u>10</u>	+4
.	.	.	

[별표 5의2]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4급 이하	<u>22</u>	<u>23</u>	+1
<u>전문경력관</u>	<u>1</u>	<u><삭 제></u>	-1